

보건소

치매안심과장	281-6229	조효미
치매안심지원팀장	281-6290	양찬임
담당자	281-6248	김수정

복지

No. 8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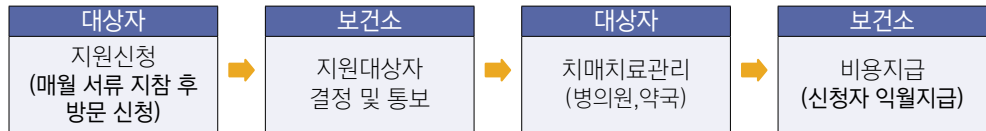
생애 전주기 맞춤형 교육·복지 체계 구축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

사업개요

- ☑ 위 치: 전주시 보건소
- ☑ 사업규모: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대상으로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전주시민
- ☑ 사업기간: 연중
- ☑ 총사업비: 57.6억원(시비)
- ☑ 사업내용: 월 3만원(연 36만원) 한도 내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
 - 지원기준: 치매 치료제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4가지 기준 충족자
 - 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
 - ② 소득기준: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
 - ③ 진단기준: 상병코드 F00~F03, F10.7, G30 중 하나로 진단받은 치매환자
 - ④ 치료기준: 처방전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여부 확인

- 지원절차



- ※ 지원제외: 장애인의료비, 보훈의료지원사업 대상자
- ※ 중복제외: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,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등

추진상황

- ☑ 사업대상: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대상으로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전주시민
- ☑ 사업규모: 2,623명
- ☑ 사업비: 635백만원(도비 413, 시비 222)
- ☑ 사업형태: 국가보조사업
- ☑ 지원형태: 국민건강보험공단 분기별 예탁
- ☑ 추진근거: 「치매관리법」 제12조(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연도별
재원투자

(단위: 억원)

구분	총투자 규모	기투자	임기 내					'27~ 계속
			소계	'22	'23	'24	'25	
합계	57.6		57.6		14.4	14.4	14.4	14.4
시비	57.6		57.6		14.4	14.4	14.4	14.4

추진절차

- ☑ 1단계 ('22. 9.~'22. 11.)
 - 사업 추진계획 수립
- ☑ 2단계 ('22. 11.~'22. 12.)
 -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담당 인력 총원
- ☑ 3단계 ('23. 1. ~)
 - 신규사업 시행 및 홍보

기대효과

- ☑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환자와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치매 치료의 지속성 향상
- ☑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 강화

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

구분		목표	추진계획
2022	3~4분기	• 사업 추진계획 수립	• 본예산 확보 • 사회보장제도 협의 • 담당 인력 총원
2023	1분기	• 2023년도 목표치 10% • 지급 인원 670명	• 신규사업 시행 • '23년도 1~3차 신청대상자 치료비 지급 •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 홍보
	2분기	• 2023년도 목표치 40% • 지급 인원 2,680명	• 4~6차 신청대상자 치료비 지급
	3분기	• 2023년도 목표치 70% • 지급 인원 4,690명	• 7~9차 신청대상자 치료비 지급 •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 홍보
	4분기	• 2023년도 목표치 100% • 지급 인원 6,700명	• 10~12차 신청대상자 치료비 지급 • 전주에 주소지를 둔 신청자 대상 1년 치료비 소급 적용
2024 ~ 2026	1~4분기	•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추진	•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추진

*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예상 인원 약 6,700명